

#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

2018. 9. 1. 개정

특허법원

## I. 목적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사건(법원조직법 제62조의 2에 따른 '국제사건'을 포함한다)에서의 변론과 심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전문화된 변론과 심리절차를 진행하여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소장제출과 서면공방

### 1. 원고의 소장 등 제출

가. 원고는 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1) 특허심판원의 심판 절차의 경위
- 2) 심결의 요지(심판단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판단)
- 3) 심결의 이유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 4) 심결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관한 모든 주장
- 5) 관련사건(동일한 특허권 등에 관한 심판·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 이하 같다)의 표시
- 6) 증거신청 계획 등을 비롯한 소송 진행 전반에 관한 의견

나. 원고는 전항의 1) 내지 6)에 대응하는 증거와 그 증명취지를 기재한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기본적 서증과 소송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법인국적증명서(당사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심결문등본 송달증명원 등의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1) 거절결정 사건: 심결문, 출원서,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 의견서, 거절결정서
- 2) 등록무효 사건: 심결문, 등록원부, 등록공보, 선행발명(선행고안, 선행등록상표, 선사용상표, 선행디자인)에 관한 증거
- 3) 권리범위확인 사건: 심결문, 등록원부, 등록공보, 확인대상발명(확인대상고안, 확인대상상표, 확인대상디자인 등)의 설명서 및 도면

다. 소장에 가.항의 소장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나.항의 기본적 서증이나 필수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재판장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에게 이를 보완하는 준비서면 또는 기본적 서증이나 필수 첨부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첨부 1]의 보정명령을 한다. 원고는 보정명령 수령 후 3주 이내에 보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준비서면, 증거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2. 피고의 답변서 등 제출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체적 청구원인이 기재된 소장 또는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3주 이내에 [첨부 2]의 준비명령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답변서와 함께, 답변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증거 및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원고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2)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 3)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 4) 기타 심결의 결론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유에 관한 주장
- 5) 관련사건의 표시
- 6) 원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인부
- 7) 증거신청 계획 등을 비롯한 소송 진행 전반에 관한 의견

나. 재판장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소장 및 답변서와 당사자들로부터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가 서면 공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게 구체적인 반박, 증거의 추가 제출 등을 명하는 [첨부 3]의 준비명령을 한다. 원고는 준비명령 수령 후 3주 이내에 준비서면, 증거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국제사건

- 가. 법원조직법 제62조의2에 근거하여 외국어 변론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첨부 4]의 외국어 변론 신청서를 제출한다(현재 국제사건에서 허용되는 외국어는 영어임).
- 나. 전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서 부분과 함께 [첨부 5]의 의견서 양식을 송달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 다.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원칙적으로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III. 사건분류 및 변론준비

### 1. 사건분류 등

가.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의 서면 공방이 완료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절차 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변론준비기일 지정이 필요한 사건 등으로 분류한다.

#### 나. 국제사건

- 1) 법원조직법 제62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사건 중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재판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 2) 법원은 당사자가 모두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를 철회하거나, 외국어 변론으로 인하여 재판진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외국어 변론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허가 취소는 이미 진행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외국어 변론 신청 철회 또는 동의 철회를 하는 경우 [첨부 6]의 철회서를 제출한다.

### 2. 변론기일을 지정할 사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장은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고 및 피

고에게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제출을 명하는 [첨부 7]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재판장은 당사자의 서면 공방 결과를 참작하여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 전문가  
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기간 등을 정한 [첨부 8]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 3. 절차 협의가 필요한 사건 - 사건관리를 위한 화상회의

가.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양쪽 당사자와 영상·음성의 송수신에 의하여 동시  
에 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이하 '사  
건관리 화상회의'라 함).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나.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에게 화상회의의  
일정을 통지하고, 그 준비를 위하여 [첨부 9]의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다.

- 1) 변론기일 횟수 및 일자, 각 기일별 진행사항
- 2)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종합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전문가 진술서 제출기간, 준  
비서면의 제출횟수 및 분량 포함)
- 3) 검증·감정이나 전문가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방법의 신청 여부 및 기간
- 4)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
- 5)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의 실시 여부
- 6)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하여 진행할 것인지 여부
- 7)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방안
- 8) 무효, 권리범위확인, 침해소송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 9) 쟁점의 확인 및 정리

라.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 10]의 절차에 관한 준비명령  
을 할 수 있다.

마. 전항의 준비명령에서 종합준비서면의 제출을 명한 경우, 원고는 사건관리 화상회의  
후 3주 이내(또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피고는 원고의 종합준비서면이 제출

된 날로부터 3주 이내(또는 준비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각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바. 준비명령에서 정한 주장·증거의 제출·신청 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예를 들어,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가장 가까운 선행발명(이하 '주선행 발명'이라 함)을 변경하거나, 선행발명이나 그 결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등]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다.

#### 4. 변론준비기일 지정이 필요한 사건

- 가.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거나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하여 위 절차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나. 변론준비기일이 종결된 이후에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한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해당 주장·증거신청을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할 수 있다.

## IV. 변론기일

### 1. 변론기일의 운영

- 가. 원고, 피고의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술로 변론한다. 수인의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위 시간 내에 변론하여야 한다. 변론시간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 나.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2 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사건과 관련된 제품(등록특허·등록디자인, 선행특허, 확인대상발명·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제품 등)을 지참하고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위 제품

에 관한 설명 또는 시연을 할 수 있다.

라. 국제사건의 당사자는 법정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변론할 수 있다. 재판장은 국제사건 소송의 지휘에 국어를 사용한다. 법원은 국제사건의 변론기일에 재판부의 말과 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통역인에게 원칙적으로 동시통역의 방법으로 통역하게 한다.

## 2. 변론기일에서 쟁점별 집중 심리를 하는 경우

가. 법원은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거나 쟁점이 여러 개여서 청구별·쟁점별로 집중심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와 협의하여 변론기일을 쟁점별로 운영할 수 있다.

나. 특히 당사자 사이에 청구항 등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그에 따라 나머지 쟁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거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청구항 등의 해석에 관한 심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청구항 등의 해석에 관한 변론을 다른 쟁점에 앞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청구항 등에 관하여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그 진행 상황을 재판부에 알려야 하고, 향후 정정심판 및 정정청구 등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관한 계획 및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3. 침해소송과의 병행심리 등

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이 동일한 재판부에 계속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양 사건을 병행하여 심리한다.

나. 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서의 관련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 ① 지적재산권의 등록번호가 동일한 관련사건은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고, ② 당사자가 동일하고 출원된 지적재산권 또는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내용이 동일·유사한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경우 재배당절차를 통해 동일한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다(구체적 절차는 '특허법원의 사건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름). 당사자는 관련사건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거나 계속 중인 경우 그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 V.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등

### 1. 증거의 신청 및 채부

가. 서증을 제출하거나,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문서제출명령, 검증 및 감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나. 증거조사절차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통해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 2. 검증 또는 감정

가.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검증 및 감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재판부는 검증 및 감정의 채부, 검증 및 감정 사항과 방식의 결정, 감정진행을 위해 확정되어야 할 전제사실 및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방안, 감정인·검증인의 선정 등의 증거조사절차의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사건관리 화상회의를 열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첨부 11]의 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검증 및 감정 목적물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3. 전문가증인

가. 전문가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첨부 12]의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전문가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한 사항(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간, 증인신문시간의 제한, 전문가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 등)의 준비를 위해 [첨부 13]의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 다.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주신문에서 전문가증인에게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는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의 제출기간 전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한다.
- 라. 전문가증인이 외국인인 경우 당사자는 각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한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다(다만, 국제사건에서 전문가증인이 허가된 외국어로 증언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통역인을 대동할 필요가 없다). 통역인을 대동하는 경우 원활한 통역을 위해 당사자는 사전에 통역인에게 기술적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하는 경우 증인신문기일 4주 전까지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마.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의 허용범위 내에서 전문가증인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원격영상신문의 방식으로 신문할 수 있다.

#### 4. 전문심리위원

- 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한다.
- 나. 전문심리위원의 사건 파악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 등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의 질문에 대해 추가로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정한 기간까지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VI. 서류의 작성 및 서증의 제출

### 1. 준비서면

- 가. 일반적 작성방식

- 1) 글자 크기는 12PT, 줄 간격은 250%로 한다.
- 2)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하게 분량을 초과하거나 2개 이상으로 나누어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절차협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분량을 초과한 준비서면의 제출 등을 허가할 수 있다.
- 3)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된 경우 해당 부분에 증거번호를 표시한다.
- 4) 기술용어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기재하고 그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
- 5) 요약쟁점정리서면에는 [첨부 7]의 별지와 같이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다툼 없는 사항, 쟁점정리표, 증거설명, 추가 제출 증거, 서증에 대한 인부, 석명사항,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 등을 간명하게 기재한다.
- 6) 종합준비서면은 서두에 모든 공격·방어방법과 주요 증거(선행발명 포함)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 7) 종합준비서면을 제외한 나머지 준비서면에는 이미 주장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재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기 제출된 준비서면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야 한다.
- 8) 국제사건의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받은 당사자는 허가받은 외국어로 작성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건의 양 당사자는 재판장의 명에 따라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나. 유의사항

- 1) 대상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의 권리관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 내역과 최종 권리자를 기재한다.
- 2)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피고는 특허청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 특허심판원의 의견제출통지, 심결에 나타난 거절이유를 정리하여 기재하고, 소송에서 다투는 거절이유가 그 중 무엇인지를 명시한다.
- 3) 특허·실용신안의 청구범위 등 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보정 또는 정정청구, 정정심결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역을 변경전과 변경후로 구분하여 기재하

고 판단 기준시점의 청구범위 등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명시한다.

- 4)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한 심리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석이 필요한 문언, 해당 문언에 관련된 명세서 기재 내용, 당사자가 주장하는 청구범위 문언의 해석 내용 및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 5) 선행발명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특허발명과 선행발명의 대응되는 구성요소를 대비한 대비표를 제출한다. 주지관용기술도 그 대비대상이 되는 부분을 특정한다.
- 6) 선행발명들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주선행발명을 정하고 선행발명들 사이의 구체적인 결합관계와 그러한 결합이 쉬운 이유를 명시한다.

(예시) 선행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X)

주선행발명인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OO 구성요소를 부가(또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 2를 대신하여 선행발명 2의 OO 구성요소를 결합)하면 특허발명이 도출되고, ...의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결합에 대한 교시, 시사, 동기 등이 있어 통상의 기술자가 그러한 결합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O)

- 7) 통상의 기술자가 법률요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우(예: 진보성, 균등범위, 자유실시기술 등)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학력, 자격, 종사분야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8) 명세서 기재불비에 관한 주장은 먼저 그 주장취지에 따른 적용조항을 명시한 다음,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 2. 증거설명서

가. 각 증거와 그 증명취지를 간략히 기재한다.

나. 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선행발명들 중 심결취소소송에서도 그대로 제출하는 것과 제출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여 기재한다(선행발명의 순번에 관하여 아래 3.의 가.항 참조).

다. 선행발명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선행발명으로 제출하는 것인지 또는 주지

관용기술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한다. 하나의 문헌에 수개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중 어떤 것을 선행발명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힌다.

### 3. 서증

가. 선행발명(고안)을 지칭하는 경우 '비교대상발명(고안)'이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선행발명(고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심결취소소송에서 새롭게 선행발명을 제출하는 경우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심판 단계에서 제출하였던 선행발명의 번호 다음에 이어서 선행발명의 번호를 붙인다(예: 심판단계에서 선행발명 1, 2, 3이 제출되었는데, 심결취소소송에서 선행발명 1은 그대로 제출하되 선행발명 2, 3은 제출하지 않고 새로 선행발명들을 제출하는 경우 이들에 선행발명 4 이하의 번호를 붙인다).

나. 당사자가 심사 및 심판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소송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는 한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 심사 및 심판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들 중 필요한 자료들은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중복 제출할 필요는 없고, 이를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아래 각 서류들은 소송절차에서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시) 심결문, 출원서 및 최초 명세서, 의견제출통지서, 보정서 및 의견서, 재심사 청구서, 거절결정서, 정정청구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확인대상 발명의 보정서, 선행기술문헌 등

다. 외국어로 된 서증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특히 외국어로 된 선행기술 문헌에 대해서는 발췌 번역문이 아닌 전문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고 기계번역(자동번역)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증명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밀줄 처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한다.

라. 국제사건에서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저히 필요하다고 보아 번역문 제출을 명한 경우는 전항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허가된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국어 또는 허가된 외국어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 마. 서증명은 문서의 제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목을 표시하고,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예: "○○회사의 상품 카탈로그(2006. 1. 2. 발행)"]. 선행발명으로 제출하는 증거는 서증명에 이를 명시한다[예시: "(선행발명 1) 등록특허공보 제0012345호"].
- 바. 한 개의 서증에는 한 개의 증거만이 포함되어야 한다[예시: 상표사건에서 수개의 블로그 게시글은 각각 별개의 서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되는 내용인 경우 가지번호로 표시한다(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2 등)].
- 사. 특허·실용신안 등의 기술적인 내용이나 디자인의 구체적인 형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시제품이나 모형,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상표·디자인 사건의 경우 색상이 있는 서증은 사본의 제출도 색상이 있는 것으로 한다. 끝.

[첨부 1]

특 허 법 원  
제 0 부  
보 정 명 령

사 건 2018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는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안에 소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기재사항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심결문등본 송달증명원, 원고의 법인국적증명서,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 0. 0.

법원사무관 000

◇ 유 의 사 항 ◇

- ※ 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의하여 소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2018허0000)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VI.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V. 증거의 신청' 및 'VI.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구체적인 청구원인이 기재된 준비서면에는 위 소송절차안내의 'II. 1. 가.항의 소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나.항의 기본적 서증과 필수 첨부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밑줄 처리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할 것, 다만 국제재판의 경우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2018. O. O.

재판장      판사

◇ 유 의 사 항 ◇

이 사건에 관하여

- ①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의 기일출석 횟수를 줄이면서도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은 1회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 ② 그러므로 당사자 쌍방은 주장과 증거를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까지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신청은 사안이 복잡·난해하여 변론준비나 증거수집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기일변경신청을 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한 상대방과 협의한 희망기일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서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서는 위 소송절차안내의 ‘VI.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V. 증거의 신청’ 및 ‘VI.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첨부 3]

특 허 법 원  
제 0 부  
준 비 명 령

사 건 2018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원고는 **2018. O. OO.까지** 다음의 체크한 사항들이 포함된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내용
- 피고가 제출한 서증에 대한 인부서의 제출(다만,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서증만 표시할 것)
- 원고가 추가로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증거와 그 증명취지(서증,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등. 다만, 서증은 상대방이 제출한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증인, 사실조회, 문서인증등본 송부촉탁, 검증 및 감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외국어로 된 증거서류에 대한 번역문 제출(기계 번역문을 제출하면 안 됨. 특히 선행발명 등 주된 증거에 대하여는 발췌 번역문이 아닌 전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그 증명취지와 관련된 부분은 밑줄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강조하여 표시할 것, 다만 국제재판의 경우 허가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에는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2018. O. O.

재판장 판사

◇ 유 의 사 항 ◇

이 사건에 관하여

- ① 우리 재판부는 당사자의 기일출석 횟수를 줄이면서도 충실한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집중심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기일은 1회로 한정할 계획입니다.
  - ② 그러므로 당사자 쌍방은 주장과 증거를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까지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일을 지키지 아니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④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의 변경신청은 사안이 복잡·난해하여 변론준비나 증거수집에 많은 기일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기일변경신청을 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한 한 상대방과 협의한 희망기일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Ⅵ.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Ⅴ. 증거의 신청' 및 'Ⅵ.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첨부 4]

## 외국어 변론 신청서

○ 사건번호 :

○ 제출자 :

○ 외국어 변론 허가신청 사유<sup>1)</sup>

당사자가 외국인인 사건

주요 증거조사가 외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제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

○ 허가신청 외국어<sup>2)</sup> :

2018. ○. ○.

원고/피고 ○○○

---

1) 아래 사유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고, 각 항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2) 현재로서는 허가 외국어는 영어로 국한됩니다.

[첨부 5]

##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서

- 사건번호 :
  
- 제출자 :
  
- 외국어 변론 신청에 대한 의견<sup>3)</sup>
  - 동의
  
  - 부동의

---

3)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합니다.

2018. ○. ○.  
원고/피고 ○○○

[첨부 6]

## 외국어 변론 신청(동의) 철회서

○ 사건번호 :

○ 제출자 :

위 사건에 관한 외국어 변론 신청(동의)을 철회합니다.

2018. ○. ○.  
원고/피고 ○○○

[첨부 7]

특 허 법 원

제 0 부

변론준비명령(요약쟁점정리서면 제출)

사 건 2018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이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을 2018. O. O. 00:00 특허법원 000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원·피고는 **2018. O. O.**까지 별지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작성례에 따라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별지>

## 요약쟁점정리서면

○ 사건번호 :

○ 제출자 :

I. 원고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

II. 다툼 없는 사항

III. 쟁점정리표

쟁점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

IV. 제출 서증(전자문서) 중 주요변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설명

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V.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

증거방법	증명취지

VI.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

VII.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

## Ⅷ.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

### ※ 요약쟁점정리서면의 작성요령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이오니, 원고 및 피고는 아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1~2페이지** 범위 내에서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쟁점정리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VI.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원고의 심결취소 사유의 요지"란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심결의 구체적 위법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그 사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항목을 나누어 기재함.

예컨대,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단순히 기재하지 말고 심결이 진보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하고,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한 경우에는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잘못 판단하였다'라고 단순히 기재하지 말고,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를 기재함

[예시 1] 심결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이하 '청구항 1')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A2"라고 잘못 이해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함에도 "B2"라고 잘못 이해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청구항 1의 구성 2와 선행발명의 구성 2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잘못 인정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청구항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구성 3이 동일함에도 상이하다고 잘못 인정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⑤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⑥ 선행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공용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인정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등

[예시 2] 심결이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예컨대, ① 상표를 이루는 "A"부분이 식별력이 없음에도 식별력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이 사건 등록상표는 "A"부분이 요부가 아니거나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으로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과 선등록상표의 호칭(또는 외관, 관념)이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④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는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유사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심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2. '쟁점'이란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다툼이 있는 사항을 의미하므로, 원고 및 피고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과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항을 추출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항" 및 "쟁점"란에 기재함(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표를 더 추가할 수 있음)

[다툼 없는 사항의 예시] ① 심결에서 정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② 심결에서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이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③ 심결에서 청구항 2~5의 한정된 구성요소가 선행발명에 나타나 있거나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투지 아니함

[쟁점의 예시 1] ①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1을 "A1"이라고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A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항 1의 구성요소 1을 "B1"이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B2"라고 이해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항 1의 구성요소 2와 선행발명의 구성 2가 상이한지 여부, ④ 청구항 1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3의 차이점을 P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K라고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⑤ 청구항 1과 선행발명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⑥ 선행발명이 출원 이전에 공지공용된 것인지 여부 등

[쟁점의 예시 2] ① 상표를 구성하는 "A"부분에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등록상표를 구성하는 "A"부분이 요부이거나 그 부분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 ③ 이 사건 등록상표의 호칭과 선등록상표의 호칭이 유사한지 여부, ④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A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K가 유사한지 여부

3.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란에는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을 간략히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기재함. 이 항목에서는 상세한 논거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항의 개요만을 간략하게 기재하면 충분함

4. "제출 서증(전자문서) 중 주요변론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설명"란에는 서증번호, 서증의 이름, 작성일, 작성자, 요지 및 증명취지 등을 기재하되, 다만 편의상 별도의 서면(증거설명서)으로 제출할 수 있음

5.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추가 제출 증거"란에는 이미 제출된 증거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의 유무를 밝히고 만일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방법 및 증명취지를 기재함. 추가제출 증거에 관하여는 증거신청서를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적법한 증거신청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아울러 특허법원은 원칙적으로 첫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변론기일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요약쟁점정리서면을 제출할 때까지는 추가제출 증거의 신청도 완료하여야 함

6. "상대방 제출 서증에 대한 인부 의견"란에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성립인정, 진정성립을 다투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인, 잘 모르는 문서에 대하여는 부지 등으로 기재함. ※ 진정성립이란 문서 작성자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변조된 것이 아님을 의미함.

7. "상대방에 대한 석명사항"란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석명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함
8. "소송 진행에 대한 의견"란에는 기일 진행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기재함

#### ※ 기타사항

1. 변론의 진행순서 및 시간: 서면 및 증거의 확인, 원고의 심결취소사유 및 쟁점의 정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변론(각 **20분** 이내), 질의·답변, 보충변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 진행순서 및 시간이 조금씩 달리될 수 있음
2. 변론 방법: 요약쟁점정리서면에 기재된 내용에 기초하여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중심으로 변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활용한 변론을 하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재판부에서 지정한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함. 도면, 도표, 대비표, 증거 등을 법정스크린에 현출하여 놓고 변론하거나 증거설명 또는 증거탄핵 등을 하는 방식으로 변론하는 것을 권장함
3.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가 복잡하여 많은 변론시간이 소요되거나 진행순서를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재판부에 그 사정 및 필요한 예상 변론시간 등을 밝히면, 재판부에서 참고함 (끝)

[첨부 8]

특 허 법 원  
제 0 부  
변론준비명령

사        건        2018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이 사건의 제1회 변론기일을 2018. O. O. 00:00 특허법원 000호 법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원·피고는 2018. O. O.까지 모든 주장 및 그에 대한 주된 증거를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2. 증인신청, 감정신청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은 2018. O. O.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유의사항
  - 가. 변론기일 변경 신청, 주장 및 증거의 제출·신청기간 연장신청은 기간이 도래하기 1주 전까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나. 주장·증거의 제출·신청 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예를 들어, 신규성·진보성에 관한 주장에서 주된 선행발명을 변경하거나 선행발명 및 그 결합관계를 추가·변경하는 등)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장·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다. 변론기일에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고, 피고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

술변론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구술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2 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품이나 모형, 관련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를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VI.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V. 증거의 신청' 및 'VI.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 다. 검증·감정이나 전문가증인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방법의 신청 여부 및 기간
- 라. 전문심리위원 지정 여부
- 마. 당사자에 의한 기술설명회의 실시 여부
- 바.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심리를 선행하여 진행할 것인지 여부
- 사. 정정심판 또는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진행방안
- 아. 무효, 권리범위확인, 침해소송 등 관련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병행심리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
- 자. 쟁점의 확인 및 정리

### 3. 유의사항

- 가. 원활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에서 다투는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화상회의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해당 청구항, 문언(구, 절 포함) 등을 특정하고, 그에 대하여 주장하는 해석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 사건관리 화상회의에서 협의된 바에 따라 별도로 발령되는 준비명령에서 주장 및 증거의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하여 주장 및 증거를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로 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주장 및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7조 제2항,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다. 특허발명의 무효사유에 관한 주장은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이후에 아래 사항에 대한 주장을 추가·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 ①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학력, 자격, 종사분야 및 기간 등)
  - ② 선행발명: 주선행발명을 추가·변경하거나 수개의 선행발명을 결합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합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 라.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

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VI.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V. 증거의 신청' 및 'VI.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나. 변론기일에는 원고, 피고 순서로 각 20분 이내의 범위에서 구술로 변론합니다.

다. 구술 변론을 위한 변론자료 등은 변론기일 **2 근무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쟁점에 관한 전문가증인의 신청 기간은 **2018. O. O.**까지로 지정합니다. 전문가증인 신청서에는 전문가증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사항 확인서[첨부 13 참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증인 신청이 채택되고 1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쳐 1회 변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VI.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첨부 11]

특 허 법 원  
제 0 부  
준비명령(화상회의)

사 건 2018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화상회의 일정

증거조사 일정 등의 협의를 위한 화상회의를 **2018. O. O. 00:00**에 영상통화(스카이프, skype) 방식으로 진행합니다.<sup>5)</sup> 회의 시작 5분 전까지 스카이프에 접속하고, 영상 및 스피커, 마이크의 상태 점검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2. 화상회의의 내용

화상회의에서는 아래의 내용 및 일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아래 사항에 대해 미리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전문가증인, 감정, 검증 등 시일을 요하는 증거의 신청 여부 및 기간
- ② 그 외 주장 및 증거신청의 제출기간
- ③ 감정진행을 위하여 확정이 필요한 전제사실 및 이를 위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방안
- ④ 전문가증인, 감정인 또는 검증인의 선정

---

5) 화상회의를 위하여는 “스카이프(skype)” 프로그램의 설치(위 프로그램은 [www.skype.com](http://www.skype.com)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와 웹 카메라(화상 카메라), 헤드셋(스피커, 마이크) 등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 3. 유의사항

가. 주장 및 증거의 제출 기간 이후 주장을 추가·변경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송완결을 지연시킨 것이 아님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장·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나. 특허법원에서는 '특허법원 심결취소 소송절차안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충실한 재판 진행을 위해 위 소송절차안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준비서면의 분량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30쪽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은 위 소송절차안내의 'VI. 서류의 작성' 부분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증거신청은 'V. 증거의 신청' 및 'VI. 서증의 제출' 부분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제출된 주장이나 증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149조에 의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

[첨부 12]

### 전문가증인 기본사항 확인서

인적 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중립성				
1	원·피고(회사인 경우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이하 같음)와 친인척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2	원·피고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원·피고와 업무를 같이 하거나, 계약관계, 고용관계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4	원·피고가 관여한 소송 또는 이 사건 특허/제품 등에 관한 소송에서 증인으로 증언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5	본건 소송과 관련하여 원·피고에게 자문을 한 바 있습니까?	예	아니오	

전문성	
1	증인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시오.
2	전문 분야에 관하여, (1) 현재 및 과거의 직업(재직기간, 직위/직책, 담당업무 포함)을 밝히고, (2) 학위/자격증, 논문/보고서, 기타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시오. <i>※ 아래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로 첨부 가능</i>

전문가증인의 의무
전문가증인은 당사자 일방에 편향되지 않게 사실과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진술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증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해당 분야에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론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야 하며, 자신의 주관적인 이론/해석에 기초하여 진술하여서는 안 됩니다.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진술합니다.

일 자 20 . . . .  
서 명

[첨부 13]

**특 허 법 원**  
**제 0 부**  
**변론준비명령(전문가증인)**

사      건           2018허0000   등록무효(특)  
                          [원고 000 / 피고 000]

2018. O. O. OO:OO 변론기일에서의 전문가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충실한 심리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준비를 명합니다.

**다    음**

1. 전문가증인의 진술서 등의 제출  
가. 원고는 2018. O. O.까지 전문가증인 진술서 및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신문은 전문가증인 진술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합니다.  
나. 증인에게 주신문에서 제시하거나 인용하는 모든 자료(관련 특허, 번역문, 실물사진, 참고자료 포함)는 2018. O. O.까지 증거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2. 전문가증인에 대한 주신문과 반대신문은 각 20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3. 각 당사자는 주신문과 반대신문을 위한 통역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통역인을 대동하지 못하는 경우 2018. O. O.까지 재판부에 이를 알리고 통역인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국제사건에서 전문가증인이 허가된 외국어로 증언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통역인을 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전문가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장 및 증거는 2018. O. O.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8. O. O.

재판장      판사